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업단지 등 조성 시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 시책
수립 · 시행 등 〉

■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14호)

2025. 9.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산업단지 등 조성 시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 시책 수립·시행 등	3

I. 제안경위

2025년 4월 17일 김교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

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신규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고(제66조의2제1항 신설),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지원하려는 것임(제66조의2제2항 신설).

III. 검토의견

1. 산업단지 등 조성 시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 시책 수립·시행 등

개정안은 정부가 산업단지 등 조성 과정에서 탄소중립 실현 촉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6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6조의2(탄소중립사회 이행과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현행	개정안
	<u>할 수 있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¹⁾에 따라 정부는 녹색기술 공동 연구개발, 시설장비 공동활용,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위한 집적지, 단지조성·지원 시 신·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제위기와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강화로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동시에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RE100²⁾ 참여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재생에너지 활용여부에 좌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를 소비할 산업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적지·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효율적 에너지 사용체계 구축 및 집적지·단지의 필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임.

단지를 연계한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 단위 계획 조성 과정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지방 산업 생태계의 재편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 및 조정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³⁾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1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적지·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효율적 에너지 사용체계 구축 및 집적지·단지의 필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관련된 단지 및 집적지 등의 조성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⁵⁾되어 있고, 동 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시책에 대한 심의도 가능하므로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기능·인력 중복 및 비효율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3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는 기후변화 정책 분과위원회, 녹색성장·산업전환 분과위원회,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중인 상황임.